

#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지급 처리에 관한 지침

## I 검토배경

-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사외(금융기관) 적립하므로 퇴직 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,
  - '17년 퇴직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,093 억원에 이르고 있음
- 이에,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을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퇴직 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

## II 지방관서 업무처리 기준

### 1. 퇴직급여 체불 신고사건 처리

-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(노사 누리시스템)하여,
  -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외한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

제도 유형	체불 퇴직급여 확정방법
확정급여형	■ (30일분 평균임금×근속연수)-퇴직연금 적립금
확정기여형	■ 미납부담금 + 지연이자* *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(연 10%)

\*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임에도 퇴직금제도로 퇴직급여 계산하는 사례 없도록 처리(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반영)

- 사업장 폐업·도산 등으로 사용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를 확인\*하고,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퇴직 급여를 직접 청구하도록 안내

\* 통합연금포털(100lifeplan.fss.or.kr)을 통해 퇴직연금 계약 정보 확인가능

- 체불 퇴직급여 확정 시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은 퇴직 급여는 제외\*하고 산정

\*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한 퇴직연금 급여 지급 영수증, 적립금 보고서 등)를 제출토록 하여 퇴직급여 수령액을 확인

### 2. 체당금 지급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

- 체당금 신청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우선 퇴직급여 지급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청구한 뒤 체당금을 신청하도록 지도
  - \*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체당금 산정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경우 체당금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을 고지
- 체당금 지급보장의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액이므로,
  -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은 제외하여 체당금 지급액 산출

## III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처리 기준

### 1. 퇴직급여 청구 절차 안내

- 사업장이 폐업·도산된 경우 가입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가입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

- 자사가 보유한 퇴직연금 외의 계약(예·적금 등)에 포함된 가입자의 연락처를 활용하여 개별 안내 시행

\* 퇴직연금 또는 그 외의 금융계약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

- 특히, 사업장·가입 근로자의 정보변동사항 확인 후 현행화

○ 가입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시 미납 부담금 현황 및 미납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안내

구분	신청 방법
퇴직급여 체불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 퇴직 후 14일 경과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민원(진정, 고소 등) 신청</li> </ul>
체당금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도산인정 등(재판상 파산, 회생절차개시결정)을 받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</li> <li>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</li> </ul>

\* 체당금 신청 전 퇴직급여 체불신고를 통한 체불사실 및 체불액 확정 절차 진행 필요

2. 퇴직연금 급여 지급

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

○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,

- 임금채권보장법상의 '도산 등 사실인정' 등 사업장 도산 등의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**비계속기준의 기준책임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**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

\* 퇴직급여 부족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

- 이때, **간사기관이 가장 최근의 가입자명부를 토대로 퇴직급여 적립비율 및 퇴직급여 지급액을 계산**

• 폐업·도산 직전 간사업무를 담당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폐업·도산 이후에도 간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, 간사기관은 계약 전체에 대한 재정검증을 실시 후 적립비율을 산출, 퇴직급여 지급업무를 처리

• '17.12월말' 이전 간사기관이 불분명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재정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적립금이 많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역할 수행

\* 한국에탁결제원 '역할정보 통합 DB'에 간사기관 정보 집적 시행

- 가입자 명부와 근로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 **체불 임금 등·사업주 확인서, 사용자가 발행한 퇴직급여계산서** 등으로 퇴직급여 지급액 확정

○ 확인서류

- 총 사외적립금액(간사기관이 복수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된 금액 취합 확인)
- 가입자 명부, 임금대장 등(사용자, 인사노무담당자 등 제출)
- 체불 임금등·사업주확인서(지방노동관서)
- 퇴직급여 소송관련 확정판결문(법원)
- 퇴직급여 체불확인서, 퇴직급여 지급 확인증 등(사용자)

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

○ 가입 근로자 개별 계정에 납입된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지급

○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\*는 체불 퇴직급여임을 안내

\*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발생된 지연이자(연10%)는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하되,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이자(연20%)는 체불 퇴직급여에 미포함(민사절차로 구제가능)

\*\* 사업장 도산 등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사유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미부과

### 3. 해당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처리

- 퇴직연금 급여 지급을 청구한 가입 근로자의 **채당금 수령 여부를 확인**하고, **채당금을 수령한** 사실이 확인된 경우,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하고 **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 통보**(붙임3 서식 참조)
- 이 때, **채당금 지급금 환수 및 가입 근로자의 개인(금융)정보 제3자(근로복지공단) 제공** 사실을 **가입 근로자에게 안내**

\*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(금융)정보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필요

**<행정해석>**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 및 일시금은 채당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, 지방노동관서(근로복지공단)에서 착오로 지급된 채당금은 회수 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
(임금복지과-223, 2009.5.19.)

### 5. 기타 퇴직연금제도 운영 처리

#### □ 퇴직소득세 원천징수

-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나, **사용자가 사업장 폐업·도산 및 행방불명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**(국세청 유권해석(서면법규과-145, 2013.2.8.))

\*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원천징수 절차에 준하여 처리

#### □ 기타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항

##### ○ 폐업·도산 사업장의 재정검증 실시 여부

- 사업장이 폐업·도산 된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재정검증의 실익이 없으므로 재정검증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

- 다만, 최종 재정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급여 지급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되는 만큼 퇴직연금사업자 간 재정검증 자료 공유, **가입자 명부 현행화 등 재정검증의 신뢰성 확보** 노력 필요

##### ○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 주체

- 퇴직연금 계약은 **보험 또는 신탁계약**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**가입 근로자에게만 지급**하는 것이 원칙

\* 사용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반환요청 불가

- 다만, DB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금이 **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**하거나,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**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**(퇴직급여보장팀-801, 2007.10.24.) 등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속 가능

##### ○ 폐업·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임의 폐지 가능 여부

- 퇴직연금제도의 폐지는 **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**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**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**하고(퇴직연금복지과-2511, 2015.7.29.), 지속적인 계약 유지 필요

**붙임1**

**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퇴직급여 처리 기준 변경**

□ 부담금 납부의무 및 미납시 제재조치

- (납부의무)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(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)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
- (제재조치) 사외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미납하거나, 부담금을 지연하여 납부하는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**지연이자\*** 발생
  - \* 지연이자율은 연 20%이나, 정기 납입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%

□ 퇴직급여 체불 사건 처리 기준 변경

- (처리기준)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경우,
  -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체불 퇴직급여를 확정하여 시정지시하고, 미이행시 법 제44조제2호에 따라 사법처리
- (변경내용)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**지연이자의 범위를 변경**
  - (현행) 정기납입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
  - (변경 후) 정기납입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를 체불 퇴직급여에 포함
- (변경 사유)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제재조치는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및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대 수익 손실 방지 장치임
  - 지연이자 부과 입법 취지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(제20조제5항, 제44조제2호) 해석상 퇴직일까지의 지연이자 및 퇴직 후 14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도 체불퇴직급여에 포함함이 타당

\* 기존의 해석의 근거자료가 없어 명확하지는 않으나,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하므로 계속 근로기간의 종료일인 퇴직일까지 발생한 지연이자가 체불퇴직급여에 포함된다고 판단됨

**<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>**

**제20조(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)**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. (단서 생략)

제4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단서 생략)  
2.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·제3항,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

※ 동 지침 시행이후부터 체불퇴직급여에 포함되는 지연이자의 범위에 대한 기존의 지침(퇴직급여제도 업무처리 매뉴얼 p129, 2013.12월)은 폐기함

**[부담금 미납 시 체불퇴직급여 확정방법 예시]**

○ 근로자 A의 근로기간 및 임금 수준 등은 아래와 같음

△ 근로기간: '15.1.1~'18.5.31, △ 부담금 정기납입일: 매년 12.31  
△ 임금: '15년 월 200만원, '16년 월 220만원, '17~'18년 월 242만원

○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은

- '15년 200만원, '16년 220만원, '17년 242만원
- '18년은 정기 납입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5개월분에 대한 부담금 1,008,333원(=242만원/12×5) 발생

○ 사용자가 '15년도 부담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정기납입일('15.12.31)에 납입하고, 이후 부담금을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계속 미납하는 경우 체불퇴직급여 총액은

- 미납부담금: 6,628,333원  
= '15년 1,000,000원+'16년 2,200,000원+'17년 2,420,000원+'18년 1,008,333원
- 지연이자: 674,329원

미납년도	지연기간	지연일수	지연이자 계산	발생금액(원)
15년	'16.1.1~'18.6.14	896	1,000,000원×10%×896/365	245,479
16년	'17.1.1~'18.6.14	530	2,200,000원×10%×530/365	319,452
17년	'18.1.1~'18.6.14	165	2,420,000원×10%×165/365	109,397

**붙임2**

**퇴직급여 직접 청구 절차 및 제출서류**

□ 퇴직급여 직접 청구 절차

-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**직접 퇴직급여 청구 가능**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24조제3항)
-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(100lifeplan.fss.or.kr)을 통해 퇴직연금 계약정보\*를 확인하고,
  - \* (DB)가입회사, (DC)가입회사, 가입일, 적립금, 상품유형, 상품명 등
-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 방문하여 퇴직급여 청구
- 직접 청구 시 필요서류

구분	구비서류
폐업·도산 사실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폐업사실 확인서(세무서, 국세청)</li> <li>● 도산 등 사실인정통지서(지방노동관서)</li> <li>● 재판상 파산의 경우 법원 결정문(법원)</li> </ul>
퇴직 사실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거나 청구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 등 징구</li> <li>●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서류(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 사유 참조 등)</li> <li>●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, 재직증명서 등)</li> </ul>
퇴직연금 지급액 계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</li> <li>※ DB형퇴직연금제도에 한함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체당금 사실확인통지서(지방노동관서)</li> <li>● 체당금 수령 확인 가능 서류(통장거래 내역 등)</li> </ul>

**붙임3**

**근로복지공단 통보 서식(퇴직연금사업자용)**

수신 근로복지공단이사장

(경유)

제목 체당금 및 퇴직급여 중복 수령자 통보

우리 기관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청구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체당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체당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근로자 성명	주민 등록번호	사업장명	중복 지급 내역					
			체당금 지급기간	지급액	퇴직급여 지급기간	지급액	중복 지급기간	중복 지급액

끝.